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 
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

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,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어 주거약자의 편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

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에 주거안전강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실태조사시 국토부 등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최저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주거약자가 생활의 터전인 주거에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